부천원종 C1블록 행복주택(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06.23.)

1. 건설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내 C1BL 행복주택 323호

- 금회 공급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4]**에 따라 **창업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지원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제3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입니다.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 신청의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 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6.23(월)**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하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본문 [9. 유의사항] 확인)
 - 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최대 거주기간 10년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 ② 주거약자용주택 : 계층별(청년, 신혼부부) 최대 거주기간 적용
-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여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고, 소득·자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여 확인·검증하며,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행복주택 임대조건은 입주자의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세부 입주자격, 임대조건 및 세대구성원 소득정보 등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플러스)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의 경우 **2025.7.7.(월)까지** ☎032-890-52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인터넷 청약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입주자격 조사·검증, 부적격자통보·소명처리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5.7.8(화) ~7.10(목)	'25.7.14(월)	'25.7.15(화) ~ 7.18(금)	소명대상 개별통보	'25.11.12(수)	'25.11.25(화) ~ 11.27(목)

- 입주자격 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 등은 연기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부천원종 C1블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23.) 현재 (가)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무자 중 (나)별도로 정하는 입주자격(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과 무주택·소득·자산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합니다.

※ 세부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3. 신청자격]** 확인

가-1) 창업인(지자체 추천),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지자체 추천) : 부천시(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로 확인)에 소재하거나 입주예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예비창업자 포함)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 (창업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② (창업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해당 기업 근로자를 포함) 또는 예비창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 참조 바람
※ 단, 유흥업 및 사행성 관련 업종은 제외
③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부천시 지역특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 포함하여 목록 별도 첨부(공고문 p.38~ 붙임참고)

가-2)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 다음의 기업 등에 근무 중인 사람(다만, 해당 기업 등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예정인 사람을 말함)

① (산업단지 근로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②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나-1)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출생일 1985.06.24.~2006.06.23.)**이며 혼인 중이 아닌 사람

나-2) 신혼부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②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사람
③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나-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나-4) 장기근속자 : 미성년자인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가-1) 및 가-2)-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일한 기업 등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인 사람
② 가-2)-②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이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3년이상인 사람

- ② **부천원종 C1블록 「주거약자용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23.) 현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주거약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4. 주거약자용주택]** 확인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공급 형별	금회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공용	주차장			
22	**159**	22.7200	12.4504	3.8013	14.1544	53.1261	철근 콘크리트 벽식 / 개별난방	**2026년 3월 (예정)**
25A	**35**	25.5900	14.0231	4.2814	15.9424	59.8369		
25B (주거약자용)	**34**	25.5900	14.0231	4.2814	15.9424	59.8369		
36	**45**	36.6700	20.0949	6.1353	22.8452	85.7454		
44	**50**	44.1500	24.1939	7.3869	27.5052	103.2360		

* 25B(주거약자용) 타입의 경우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

(금액단위: 원)

공급 형별	기본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신분 요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	잔금				
22	청년	44,640,000	2,232,000	42,408,000	186,000	(+) 12,000,000	56,640,000	116,000
						(-) 37,000,000	7,640,000	293,910
	신혼부부/한부모가족/장기근속자	49,600,000	2,480,000	47,120,000	206,660	(+) 15,000,000	64,600,000	119,160
						(-) 41,000,000	8,600,000	326,240
25A/B	청년	49,680,000	2,484,000	47,196,000	207,000	(+) 16,000,000	65,680,000	113,660
						(-) 41,000,000	8,680,000	326,580
	신혼부부/한부모가족/장기근속자	55,200,000	2,760,000	52,440,000	230,000	(+) 19,000,000	74,200,000	119,160
						(-) 46,000,000	9,200,000	364,160
36	청년	70,920,000	3,546,000	67,374,000	295,500	(+) 30,000,000	100,920,000	120,500
						(-) 59,000,000	11,920,000	467,580
	신혼부부/한부모가족/장기근속자	78,800,000	3,940,000	74,860,000	328,330	(+) 33,000,000	111,800,000	135,830
						(-) 66,000,000	12,800,000	520,830
44	청년	86,400,000	4,320,000	82,080,000	360,000	(+) 37,000,000	123,400,000	144,160
						(-) 72,000,000	14,400,000	570,000
	신혼부부/한부모가족/장기근속자	96,000,000	4,800,000	91,200,000	400,000	(+) 41,000,000	137,000,000	160,830
						(-) 80,000,000	16,000,000	633,330

- 신분 요건 중 청년계층 신청자의 범정부조회 결과,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고시에 따른 소득없는 청년의 임대조건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공급형별 물량의 **4배수 이상을 입주자격 검증 대상자(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격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실제 입주까지의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
- 부천원종 C1블록 행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4] 제3호에 따라 공급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입니다. 최초 공급 이후 남은 공급물량은 추후 일반 행복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공급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거약자용주택(25B타입)은 주거약자에게 공급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연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연이율 3.5%를 적용한 것**이며, **향후 전환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이며, **입주시작 약 1개월 전에 LH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 예정인 분들도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 상의 계약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3.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 : 19세 미만
-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본문 [9. 유의사항] 확인)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공급대상**

금회 공급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입주자격 요건(가, 나, 다, 라)을 모두 갖춘 대상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거약자용주택은 공고문 본문 [4.주거약자용주택] 확인)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경쟁 시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공급형별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합니다.**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서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에 소재하거나 입주예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예비창업자 포함) 우선 선정	⇨	추첨

* 청약신청서 작성 시, 우선선정 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자께서는 신청인 필수 부가정보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는 입주예정인 사업장 근무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약신청자는
입주자격 요건(가. 나. 다. 라.)을 모두 갖추어야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가. 직업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창업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산업단지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1) 창업인(지자체 추천),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지자체 추천) : 부천시(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로 확인)에 소재하거나 입주예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예비창업자 포함)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 (창업인)「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② (창업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해당 기업 근로자를 포함) 또는 예비창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 참조 바람
※ 단, 유흥업 및 사행성 관련 업종은 제외
③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부천시 지역특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 포함하여 목록 별도 첨부(공고문 p.38~ 붙임참고)

가-2)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 다음의 기업 등에 근무 중인 사람(다만, 해당 기업 등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예정인 사람을 말함)

① (산업단지 근로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② (중소기업 근로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 **가-1)** 은 **지자체(부천시)의 장이 정한 입주자 선정요건**으로 서류제출 후 지자체의 입주자격(직업요건) 검증·추천을 통해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LH가 접수를 받아 지자체에 검증·추천을 요청하고 지자체로부터 확인받는 방식)

가-1) 창업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부천시 기업지원과**	
	- 지역특화산업 관련	특화산업팀 ☎ 032-625-2741
	- 지식기반산업 & 창업인 관련	기업SOS팀 ☎ 032-625-2756

나. 신분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나-1)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출생일 1985.06.24.~2006.06.23.)이며 혼인 중이 아닌 사람

나-2) 신혼부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②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사람
③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나-3)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나-4) 장기근속자 : 미성년자인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가-1) 및 가-2)-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일한 기업 등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인 사람
② 가-2)-②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이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3년 이상인 사람

다. 무주택 요건(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주택[1]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① **청년** : 입주자 본인
②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③ **그 밖의 경우**(①, ② 외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각목에 따른 세대원

* 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공고문 본문 **[8. 무주택·소득·자산 검증기준]** 확인

* 2)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라. 소득·자산·주택청약종합저축 요건

▶ 소득 요건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일 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맞벌이 130%) 이하일 것
▶ 자산 요건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단, '청년'인 경우 25,400만원) 이하** 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세대**란

① '나. 신분요건'이 '**청년**'인 경우

주택공급 신청자	해당세대	비고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청년	• 신청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인 청년	• 신청자	-

② '나. 신분요건'이 **'신혼부부/한부모가족/장기근속자'** 인 경우

해당세대	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자산 기준액**

① '나. 신분요건'이 '**청년**'인 경우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4,317,797원 이하	120%
	2인	6,024,703원 이하	110%
	3인	7,626,973원 이하	100%
	4인	8,578,088원 이하	100%
	5인	9,031,048원 이하	100%
	6인	9,733,086원 이하	100%
세대원(본인)	1인	4,317,797원 이하	12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 **청년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구분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최종 소득 · 자산기준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0인	120%	254,000,000원	38,030,000원
	2인	0인	110%	254,000,000원	38,030,000원
		1인	120%	279,000,000원	41,830,000원
	3인 이상	0인	100%	254,000,000원	38,030,000원
		1인	110%	279,000,000원	41,830,000원
		2인 이상	120%	305,000,000원	45,630,000원
세대원(본인)	1인	0인	120%	254,000,000원	38,030,000원
	2인	0인	110%	254,000,000원	38,030,000원
		1인	120%	279,000,000원	41,830,000원
	3인 이상	0인	100%	254,000,000원	38,030,000원
		1인	110%	279,000,000원	41,830,000원
		2인 이상	120%	305,000,000원	45,630,000원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② '나. 신분요건'이 **'신혼부부/한부모가족/장기근속자'** 인 경우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6,024,703원 이하	110%	7,120,104원 이하	130%
3인	7,626,973원 이하	100%	9,152,368원 이하	120%
4인	8,578,088원 이하	100%	10,293,706원 이하	120%
5인	9,031,048원 이하	100%	10,837,258원 이하	120%
6인	9,733,086원 이하	100%	11,679,703원 이하	12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및 장기근속자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구분	가산항목			최종 소득 · 자산기준 (한도)		
	맞벌이 여부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한부모가족	X	2인	0인	110%	337,000,000원	38,030,000원
			1인	120%	371,000,000원	41,830,000원
		3인 이상	0인	100%	337,000,000원	38,030,000원
			1인	110%	371,000,000원	41,830,000원
			2인 이상	120%	405,000,000원	45,630,000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장기근속자	X	2인	0인	110%	337,000,000원	38,030,000원
		3인	0인	100%	337,000,000원	38,030,000원
			1인	110%	371,000,000원	41,830,000원
		4인 이상	0인	100%	337,000,000원	38,030,000원
			1인	110%	371,000,000원	41,830,000원
			2인 이상	120%	405,000,000원	45,630,000원
	○	2인	0인	130%	337,000,000원	38,030,000원
		3인	0인	120%	337,000,000원	38,030,000원
			1인	130%	371,000,000원	41,830,000원
		4인 이상	0인	120%	337,000,000원	38,030,000원
			1인	130%	371,000,000원	41,830,000원
			2인 이상	140%	405,000,000원	45,630,000원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30%	140%
1인	-	-	4,317,797원 이하	-	-
2인	-	6,024,703원 이하	6,572,404원 이하	7,120,104원 이하	7,667,804원 이하
3인	7,626,973원 이하	8,389,670원 이하	9,152,368원 이하	9,915,065원 이하	10,677,762원 이하
4인	8,578,088원 이하	9,435,897원 이하	10,293,706원 이하	11,151,514원 이하	12,009,323원 이하
5인	9,031,048원 이하	9,934,153원 이하	10,837,258원 이하	11,740,362원 이하	12,643,467원 이하
6인	9,733,086원 이하	10,706,395원 이하	11,679,703원 이하	12,653,012원 이하	13,626,320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4. 주거약자용주택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공급대상**
 ① [**일자리연계형 주거약자**] 금회 공급하는 주거약자용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주거약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공고문 본문 **[3.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② [**일반 주거약자**] ①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 신청자격 중 나(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다, 라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거약자용주택은 **경쟁 시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공급형별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합니다.**

[주거약자용주택]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서 (일반 주거약자에 해당)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직업요건·신분요건 갖춘 자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신청자격을 갖춘 주거약자(일자리연계형 주거약자)] 청약신청서 작성 시 "신청주택 및 신청자격 등"의 직업·신분요건 란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신청자격은 공고문 본문 [3. 신청자격]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 란**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경쟁 시 **"순위" (일반 주거약자에 해당)**

구 분		순위
청년	1순위	**부천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이외 지역**)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부천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을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로 하는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이외 지역**)를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로 하는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경쟁 시 **"주거약자용 배점" (일반 주거약자에 해당)**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1) 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부양가족 범위는 아래 표 참고	3인 이상	2인	1인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2)(부천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아래 "부양가족의 범위" 참고
*2)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의 **거주시작일 기준**)
당해지역 거주기간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재등록일로부터 계속 거주기간을 산정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확인서로 장애의 정도 확인

***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5.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인터넷 신청접수 (PC / 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5.7.8.(화) 10시 ~ 7.10.(목) 16시 **인터넷 (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플러스) 신청** ※ 신청기간 내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25.7.14.(월) 14시 이후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조회	'25.7.15.(화) ~ 7.18.(금)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만 가능** **※ 등기우편은 '25.7.18.일자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 ※ 일반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등기우편 발송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서비스팀 부천원종 C1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25.11.12.(수) 14시 이후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 명단' 조회 또는 **ARS(1661-7700)**	'25.11.25.(화) 10시 ~ 11.27.(목) 16시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 입주자격 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 등은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 **[청약접수]**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플러스)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의 경우 **2025.7.7.(월)까지** ☎032-890-52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해당서류들을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확인>서류제출 대상자 명단 조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함)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당첨확인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으로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청약접수 (인터넷·현장)	서류제출대상자 선정·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입주자격 검증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LH	LH	LH	지자체*, LH	LH	LH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4에 따라 '창업인/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서 심사함**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소득 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소득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자료의 출처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 청약 방법

* **청약방법**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인증서(공동인증서 등) 로그인>청약>임대주택>청약신청>**건설임대**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등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 인증서 로그인>청약>임대주택>청약신청>**건설임대**
 - 앱 ("LH청약플러스"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등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지구(블록) 선택	주택형 선택	공급구분 선택	청약신청서 작성	청약신청 완료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기타사항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025.7.8.(화) 10시부터 접수마감일 2025.7.10.(목) 16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06.23.)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신청자별 해당 세대는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 이후 청약신청 철회 불가

※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공급대상자별 제출서류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신청자] ①공통 제출서류**와 **②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직업요건 / 신분요건 증빙서류** 중 해당서류 모두 제출
- [일자리연계형 주거약자 신청자] **①공통 제출서류**와 **②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직업요건 / 신분요건 증빙서류 ③주거약자용주택 증빙서류** 중 해당서류 모두 제출
- [일반 주거약자 신청자] **①공통 제출서류**와 **②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신분요건(청년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중 하나) ③주거약자용주택 증빙서류** 중 해당서류 모두 제출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5.7.14(월) 14:00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P C : LH청약플러스→『청약』클릭 →『청약결과확인』클릭 →『서류제출대상자명단』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청약』→『청약결과확인』클릭 →『서류제출대상자명단』클릭

○ 등기우편 접수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 기한(25.7.18.)내에 등기우편으로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5.7.18.)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됩니다.**
-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 및 택배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논현동)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서비스팀 부천원종 C1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 서류제출 시, 봉투 겉면에 블록명과 접수번호, 신청형을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공통 제출서류 (※ 16~18페이지의 [공급대상별 증빙서류]도 반드시 확인!!)

구분	제출대상, 작성방법, 서류내용 등	비고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공사양식 1-1)	• **(동의방법)** 내용 확인 후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사양식 1-3)	• **(작성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LH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확정일자 대신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 **(주의)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사양식 1-2)	• **(작성 대상자)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청년**" 계층의 해당 세대 : 공고문 7페이지 확인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장기근속자**"의 해당 세대 : 공고문 7페이지 확인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사양식 1-4)	• **(동의방법)** 공고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주민등록표 등본 (전부표기)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각1통 [유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표기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전부표기) — 배우자 / 예비배우자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모두 제출	
주민등록표 등본 (전부표기) — 해당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청년", "한부모가족" 신분으로 신청하는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 신분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주민등록표 초본 (전부표기)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자(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추가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임신진단서 (해당자 제출)	• 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의 자격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중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태아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각1통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미제출 시 입주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기타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거소사실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가능 시 거소사실증명 불요) • 입양자녀를 인정받고 싶은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 병역의무이행 후 재청약 시 병적증명서 및 이전 공공임대주택 계약기간 확인 가능서류 등 기타 입주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발급처 안내

구분	발급처
임신진단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병역의무이행 재청약자) 병적증명서	병무청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행정복지센터 등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직업요건 / 신분요건 증빙서류 (※ 15~16페이지 [공통 제출서류]도 반드시 제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제출서류
직업요건 필수서류	창업인 /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지자체 심사용]	• **입주신청서(지자체심사용, 공사양식 2-1)**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지자체심사용, 공사양식 2-2)** • **주업종코드확인서** *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표준산업분류코드(본 공고문 38페이지 붙임 목록 참고)를 미리 확인요 * (주업종코드확인)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기업) → My홈택스 → 기타세무정보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클릭 → 상세보기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포함)을 '25.9.12일까지 제출) • **입주대상별 해당서류** (a.~d. 중 하나 제출 요)

입주대상 구분	해당자 추가서류
a. 1인 창조기업 창업자	- **K-스타트업(창업진흥원)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 증빙서류**
b. 창업자(근로자 포함)	-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창업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또는 부천시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입주기업의 경우)
c.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확인 - **창업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또는 부천시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입주기업의 경우) * 예비창업자의 경우 상기서류 외의 해당 서류를 서류제출기한('25.7.15.~ 7.18.) 내에 반드시 제출하고, 상기 서류에 한하여 '25.9.12일까지 추가 제출하여야 함
d. 부천시 지역특화산업 근로자	-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산업단지 종사자	• **산업단지 입주업체확인서 (팩토리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고일 재직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1년 이상 근무(예정) 기간 소명 자료 추가제출
	중소기업 종사자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확인서** ※ 청약신청자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중소기업근로자 확인서 발급신청(확인서 신청기간 : 2025.7.15(화) ~7.18(금))을 하고, 그 결과를 우리공사가 해당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근무이력 및 근무기간을 확인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고일 재직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1년 이상 근무(예정) 기간 소명 자료 추가제출
신분요건 필수서류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및 **세대구성 확인서** **(공사양식 3-1, 3-2)** •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미혼인 경우도 발급가능) ※ 입주 전까지 혼인 후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추가 제출 (미제출 시 입주 불가,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됨)
	장기근속자	•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①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와 ②해당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본인/배우자 각각 제출 • **[경쟁 시 우선선정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위 직업요건 필수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로 '부천시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는 입주예정인 사업장 근무여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제출 요 (※확인 불가 시 우선선정 제외)

※ **서류 발급처 안내**

구분	발급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직장, 세무서, 등기소 등
주업종코드확인서	홈택스에서 조회·출력 (+해당직장 직인 날인)
K-스타트업(창업진흥원)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 증빙서류	K-스타트업(창업진흥원, www.k-startup.go.kr)
창업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
산업단지 종사자 입주업체확인서	팩토리온 (www.factoryon.go.kr)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es.go.kr/sanhakin)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거약자용주택 증빙서류** (※ 15~16페이지 **[공통 제출서류]**도 반드시 제출!!)

주거약자용주택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주거약자 증빙 필수서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행정복지센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부(지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12.7.1전 등록자)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국가보훈부(지청)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부(지청)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보훈부(지청)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보훈부(지청)
필수서류	• 아래 중 하나 해당되어야 함 **[일자리연계형 주거약자 신청자]** 공고문 16~17페이지의 **'직업요건 및 신분요건' 필수서류** **[일반 주거약자 신청자]** 공고문 17페이지의 **'신분요건(청년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중 하나)' 필수서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①국민연금 가입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와 ②해당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본인/배우자 각각 제출		
	• **[가점 해당자] (※ 일반 주거약자에만 해당)**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확인서(신청자 본인 해당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일반 주거약자 신청자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사람** ※ 아래서류 각1통		
	본인 및 배우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본인 및 배우자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해당 직장
	본인 및 배우자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등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5.11.12.(수) 14시 이후]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 동·호가 발생하여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청약결과확인』→ 『당첨/낙찰결과조회』클릭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고객서비스』→『나의정보』→『예비입주자 순위』클릭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안내

-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안내 및 입주안내를 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 ['25.11.25(화) 10시 ~ 11.27(목) 16시]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입금	우리공사 입금확인 (SMS 발송)	【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Google Play)
		로그인 (공동인증서/휴대폰인증) → 계약체결(공동인증서) → 계약서 출력, 보관(공동전자문서센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 「우리공사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SMS는 신청접수 시 "SMS 수신동의"한 신청자에 한하여 발송하고, 수신동의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저장이 가능합니다.

■ 현장계약

-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전자계약이 어려우신 분의 경우 ☎032-890-5245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며, 서류미비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공통서류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 계약금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및 여권정보증명서*,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양식 4),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생략가능

8.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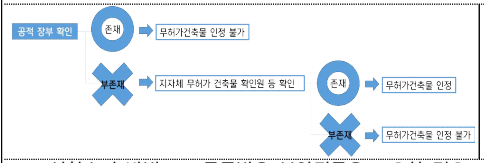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참고) 무허가건물 확인 절차



* **소명방법**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⑫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트,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 지방세정 자료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직권조사 등록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9. 유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공주택 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table>
<tr><th>관련항목</th><th>유의사항</th></tr>
<tr><td>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td><td>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tr><th>입주자격</th><th colspan="3">최대 거주기간</th></tr>
<tr><td>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td><td colspan="3">10년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td></tr>
<tr><td rowspan="2">주거약자용주택</td><td rowspan="2">계층별 적용 기간</td><td>청년 계층</td><td>10년</td></tr>
<tr><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td>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td></tr>
</table>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이 다시 같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 후 다시 같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최대 14년으로 합니다.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는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해당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단, 소득·자산 등 기준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td></tr>
<tr><td>예비입주자</td><td>•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td></tr>
<tr><td>중복입주 금지</td><td>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배우자 포함)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td></tr>
<tr><td>갱신계약 등</td><td>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직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한 차례 한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갱신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시점 입주자의 소득 및 임대시세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자격을 확인합니다.

•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되고,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td></tr>
</table>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 110% / 120% 10%초과 30%이하 / 120% / 130% 30%초과 / 130% / 140%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릅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당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갱신계약 불가**) •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신청자격 등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여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고, 소득·자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여 확인·검증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청약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T. 1600-1004)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자동차 등록 관련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5년의 경우 3,803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여건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의 개발사업은 사업진행 중으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과 주변 기반시설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 북측에 방음벽이 있으며, 봉오대로 건너편에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개발 예정임에 따라 이로 인해 지구 내·외부 여건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고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일부 지역편의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 도로 신설·확장계획은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 북측 구간에 봉오대로 및 지구 남측 구간에 소사로가 존재함에 따라 소음·진동·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원일초등학교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가 있으며,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사업기간은 관계기관 협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연기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성공사 일정도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연결되는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 중으로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부천원종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 주변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외부여건	• 단지 외부여건을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팸플릿 등 홍보물에 표기된 주변 공원, 녹지, 하천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의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관계기관 협의 및 공사여건 등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 북측으로 부터 약 1.5km 이격하여 김포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 및 건축물 높이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 상업시설 및 자족시설 등 인접용지로 인하여 소음, 분진, 빛공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내부여건	•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승인 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관리사무소, 커뮤니티센터, 사회적기업,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용역원 휴게실, 펌프실, 발전기실,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며, 이에 일부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 및 상업시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 및 각 동 주출입구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 소음 및 전조등, 보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방충망은 각동 1층 및 36, 44형 중 복도와 면하는 창호만 설치가 됩니다.
- 단지 내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와 인접한 동 저층부 세대는 소음,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시공계획(세부 식재 및 시설물 위치 등) 및 추진 일정 등은 공사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는 단지 내외부 조경계획으로 인한 일조량, 조망권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및 임대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 외부 레벨 차이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 토목, 조경, 마감, 부대시설 등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전기실, 저수조 등 공용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실·발전기실 설치로 인해 인근 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자세한 위치는 단지배치도 참조)
- 아파트 지하층에 집수정 배수펌프, 발전기 D.A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 ·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수,오수, 도시가스, 한전 등)계획은 인 · 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 ·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 · 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 · 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및 대지는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 하여야 하므로 특정 입주자 또는 단체가 점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또는 임대)시설이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의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주거시설과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 · 일조 · 조망 등의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각 동 1층이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로 시공되어 일부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과 어린이놀이시설에 근접하여 배치된 각 동 저층부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외부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 시 일부 인접세대 소음 · 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시설은 지역 주민이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 및 각 동 주출입구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 소음 및

전조등, 보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지하 170대, 근린생활시설 지상 6대이며, 자전거보관소는 35대, 무인택배보관함은 101동 지하1층, 102동 지상1층 출입구에 설치될 예정입니다.(단,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지하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지하2층 2.3M, 지하1층 2.7M이며, 단지내 주차가능대수는 총 176대(지상6대, 지하170대/전기차 9대 포함)입니다.**

*** 단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의 "자동차기준액" 미충족시 주차대수와 상관없이 주차가 불가합니다.**
- 주차장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 인근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각동에 설치된 승강기와 승강기 제어반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101동 지붕층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수신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1층에 관리사무소, 방재실 및 MDF실이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및 102동은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인접하여 야간에 불빛으로 인한 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생활자원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될 예정이고, 특히 생활자원보관소는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주변으로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 생활자원보관소의 디자인 및 배치를 각 세대의 단순 미관사항으로 변경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이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 및 입면분할창 특성상 전 세대 이사 시 사다리차 이용이 어려우며, 엘리베이터 사용을 권장합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 및 피뢰도선이 설치됩니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 급속1대, 완속8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승강기는 각 동에 저층부 1대, 고층부 2대씩 설치가 됩니다.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입니다.
- 아파트 지붕층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됩니다.
- 단지 내 지상주차장 출입구에 디지털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외부에서 홈네트워크 시스템 연동을 위해서는 고정IP가 필요하며, 공용 통신요금이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승강기, 지상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출입구 및 각 동 출입구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하주차장 및 지상주차장에 설치됩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공용배기방식의 루프팬(주방 환기용) 및 무동력 흡출기(욕실 환기용)가 근접해 있어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는 102동 1, 2, 7호세대, 11~19호세대 1개층으로 필로티 상부세대는 외기에 면함에 따른 결로나 난방효율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가동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에서 배출되는 열기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슬라브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아파트 각 층 승강기 홀 및 계단실 내 환기창은 전층 설치되나, 승강기 홀, 계단실의 채광 · 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 · 호수 및 배치에 따라 상이하여 환기 및 채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단실 및 승강기 홀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의 승강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점유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 · 구조 · 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와 지반현황 및 각종 평가 · 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표시 · 아파트 문양 · 벽체 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외부, 주현관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 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부마감이 없으며 별도의 실(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환기탑이 설치되어 소음 및 열풍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위치는 단지배치도 참고)
세대여건	• 22형, 25A/B형에는 벽걸이 에어컨, 가스쿡탑 2구형, 소형냉장고, 냉장고장, 붙박이장, 책상이 설치됩니다. • 팸플릿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성능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성능 향상 등을 위해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6, 44형은 발코니(세탁실)에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어 대용량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 시 점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전기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및 환기유닛,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됩니다. • 발코니 실외기실에 전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바닥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어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자동소화장치 또는 레인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현관, 발코니, 승강기 홀 등의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은 합성수지 재질이며, 욕실 천장재는 ABS 판넬로 시공되며 천장에 점검구 시공 예정입니다.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합니다.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입니다.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공사용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 공사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내경 치수 등은 골조 및 마감공사의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방가구, 합성수지 창호 등의 자재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반침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은 원활한 시공을 위해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 방식으로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급수 · 급탕 분배기 및 주위 배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며 침실 및 거실벽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은 조립식욕실로 시공되며,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 및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천장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평형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 환기는 기계환기방식(강제급기+강제배기)을 적용하며, 덕트 및 디퓨저는 거실과 각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배기는 옥상에 배기팬이 설치되고 세대 레인지후드에는 댐퍼만 설치되는 공용배기방식을 적용합니다.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 · 외에 설치됩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단말기가 설치되며 난방제어 기능을 합니다.(단, 현장여건에 따라 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정형으로 설치됩니다. • 홈네트워크시스템 세대단말기(7"LCD) 서비스(도어카메라, 현관자석감지기 및 동작감지기와 연동), 제어서비스(가스밸브차단, 거실 네트워크스위치조명, 난방온도, 환기), 통화서비스(욕실비상콜,주거약자에 한함), 대기전력차단서비스(거실대기전력차단스위치 연동), 단지공용기본서비스(공동현관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차량통제시스템연동)를 제공합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중계기는 지하 1층에 설치될 예정입니다.(단, 설치장소 및 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세대통합관리반은 22,25타입(거실,욕실 맞은편) 36,44타입(현관창고 맞은편)에 설치됩니다.
일반사항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배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증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주택형이라도 동호 라인에 따라 팸플릿과 달리 평면이 대칭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 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 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사업지구 주변을 방문하여(현장은 출입불가)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팸플릿 등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승강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의 외관, 조경, 식재 디테일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의 각 항목에 대한 설치는 당첨 후 계약기간 접수분에 한해 가능하며, 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하며, 준공 전 6개월까지 신청세대와 그 이후 신청세대의 시공업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층간, 세대 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리모델링 등 불법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공급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인쇄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단지특화도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및 수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옥상조경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팸플릿에 포함되지 않는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 수준 내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의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면의 환기구 및 창호 개폐가능 여부 등의 세부적인 표기는 생략되었습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증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 학교배정은 관할 교육청에서 행정구역 및 학생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담당기관	문의처
초등학교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032)620-0112
중학교		
고등학교	경기도 교육청(경기에듀콜센터)	031)1396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청약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향후 사업계획(입주시기, 세대수, 주택면적)의 변경,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학생배치계획 변동요인 발생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학생 수용여건, 학생 수용계획 등에 따라 해당 관청의 학교 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등이 달라지므로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검토 사항		적용 여부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전기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조명설치(다목)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11.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부천원종 C1BL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건설(주) (412-81-02461) 제일건설(주) (124-86-09636) 삼우종합건설(주) (138-81-03956)	-	㈜케이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아이티엠코퍼레이션 건축사사무소 ㈜해우이엔지

12.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주거약자용 주택에만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세대단말기 설치	주거약자 전체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주거약자 전체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주거약자 전체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주거약자용 주택 외 일반세대에만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씽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세대단말기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세대단말기 점자표지	세대단말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 설치관련 유의사항

(※ 공사진행 정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25. 11. 25(화) ~ 11. 27(목)]**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추후 계약 장소에 비치 예정
-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및 가족) 확인서
- ▶ 편의증진시설 설치 해당세대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문의 바람(문의 : 032-890-5245)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당첨자 ARS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LH 인천지역본부 약도	 - 지하철 : 수인선 호구포역 2번 출구 (도보 5분) - 버 스 : 20번, 20A번, 38번, 3-2번, 103-1번 (논현3단지하늘마을 또는 인천남동우체국 하차)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6. 23.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붙 임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분류코드**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해당 여부는 재직 중인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주매출 업종이 아래 한국표준산업 분류(통계청-통계분류포털) 코드에 해당하는지를 부천시에서 확인합니다.

※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추천자격 관련 문의
- **지역특화산업 : 부천시 기업지원과 특화산업팀 (☏ 032 - 625 - 2741)**
- **지식기반산업 : 부천시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 032 - 625 - 2756)**

□ 부천시 지역전략산업이란?

❍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①지역특화산업(5개 산업), ②지식기반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선도적으로 육성

전략산업 분류명	구 분	한국표준산업 분류	
		표준산업코드 (5자리)	항목명
지역특화산업	금형산업	25931	날붙이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조명산업	28113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로봇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패키징산업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6232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17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17212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229	기타 종이상자 및 용기 제조업

전략산업 분류명	구 분	한국표준산업 분류	
		표준산업코드 (5자리)	항목명
지역특화산업	패키징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5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9192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세라믹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3212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2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2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0201	경제 및 경영학 연구 개발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전략산업 분류명	구 분	한국표준산업 분류	
		표준산업코드 (5자리)	항목명
지식기반산업	연구개발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0201	경제 및 경영학 연구 개발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21	측량업
		72922	제도업
		72923	지질조사 및 탐사업
		72924	지도 제작업
	광고물 작성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전략산업 분류명	구 분	한국표준산업 분류	
		표준산업코드 (5자리)	항목명
지식기반산업	출판업	58111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58121	신문 발행업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3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포장 및 충전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교육 서비스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2. 법 제6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3.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경영컨설팅업	71531	경영컨설팅업 (재정, 인력, 생산, 시장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 및 지원을 하는 기업)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3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전략산업 분류명	구 분	한국표준산업 분류	
		표준산업코드 (5자리)	항목명
지식기반산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76400	무형재산권 임대업
	광고대행업	71310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 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이러닝 산업[이러닝사업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7호(출판업), 10호(교육서비스업), 정보통신산업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